

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

제 3 파 산 부

위 등본입니다.

결 정

2014. 2. 11.

서울중앙지방법원

법원사무관 이율림



사 건 2012회합185 회생

채 무 자 주식회사 웅진홀딩스

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20 종로플레이스빌딩

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신광수

주 문

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기록에 의하면,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.

- ① 채무자에 대하여 2013. 2. 22.자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,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 후 변제할 총 금액은 1조 2398억 7700만원이다.
- ② 채무자는 2013년에 변제하여야 할 채권 9131억 2900만원 중에서 주식 등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물상보증채무, 채권자 확인 불능으로 변제가 곤란한 채무 등 348억 6500만원을 제외한 8782억 6400만원을 변제하여 계획 대비 96.18%의 변제를 달성하였다.

③ 채무자는 2014년 이후에 변제하여야 할 채권 중 조기변제에 동의한 채권자에 대하여 381억 98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.

④ 채무자가 보유하는 자회사(웅진케미칼·웅진식품) 주식 등 대부분의 매각 자산이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으며, 제3자 배정 유상증자대금 유입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회생계획상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.

⑤ 이 법원의 의견 조회 결과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 모두 채무자에 대한 종결 결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.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,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4. 2. 11.

재판장 판사 이종석

판사 서경환

판사 서정원